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도선구의 명칭		도선사 면허 등급	
면허일		도선사면허증 유효기간	부터 까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추천서 2. 「도선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도선사면허증 사본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